

2022 총회 보고서

- * 일시 : 2022. 1. 10(월) 오전 10:00
- * 장소 : 사랑의교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2

TEL: 02-747-1225 FAX: 02-764-1225

www.koreandiakonia.org kd@koreandiakonia.org

■ 목차

01. 조직	
가. 법인 이사 명부	3
나. 조직(임직원) 명부	3
02. 회의록	
가. 총 회	4
나. 이사회	6
03. 2021년 사업보고	8
04. 2021년 감사보고	13
05. 2021년 결산보고	15
06. 2022년 사업계획	17
07. 2022년 예산(안)	21
08. 정관 대조표	22
09. 법인 정관	25
10. 회원규정	33

1. 조직

가. 법인 이사 명부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손인용 (덕수교회)
권태진 (군포제일교회)	오정현 (사랑의교회)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오정호 (새로남교회)
김성이 (한국관광대학교)	유만석 (수원명성교회)
김종생 (한국교회봉사단)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김한호 (춘천동부교회)	정성진 (크로스로드)
박경배 (송촌장로교회)	황성은 (창동염광교회)
박동찬 (일산광림교회)	황덕영 (새중앙교회)
박종삼 (한국개신교사회봉사연구소)	

※ 가나다 순

나. 한국교회봉사단 조직(임직원) 명부

고 문	김경원 박경조 박종삼 박종화 신경하 이정익 장중현 장차남 조성기 최희범(상임)
명예회장	김삼환 손인용 오정현
대표회장	정성진
공동대표(8)	오정호(합동) 김봉준(기하성) 양병희 / 유만석(대신) 윤성원(기성) 신상현(고신) 권태진(합신) 박성민(기관)
상임단장(7)	황성은(통합,국내사업본부장) 박동찬(기감,국내재난본부장) 황덕영(백석대신,북한사업본부장) 김한호(통합,해외사업본부장,회계) 박철규(대신,서기) 김문훈(고신) 김동배(평신도,디아코니아포럼)
중앙위원(79)	길성운 김인기 김종준 모상련 박명배 박성규 옥성석 이문희 이상화 이승희 정영교 최종천 홍문수 (합동13) 김만준 김영걸 김영철 김운성 김종생 김한호 박영철 배성식 신광호 심영섭 이상학 장경덕 최영태 (통합13) 곽주한 김병삼 김상현 방원철 서 철 서호석 유기성 주성민 지성래 (기감9) 김명현 신성남 정재우 함덕기(기하성4) 문강원 박경배 박응순 이규환 임영섭 조한권 (대신6) 김종웅 박순영 서도형 성창용 윤창용 이기용 조원근 지형은 (기성8) 김근중 김호민 박상완 박정근 박창환 안희목 윤재철 정승룡 (기침8) 김철봉 박홍철 정현구 최한주 (고신4) 김원광 박삼열 이주형 이철호 장덕만 (합신5) 강준모 권오륜 박유철 육순중 장 빈 최홍규 (기장6) 최일도 허기복 김원일 (기관 3)
감 사	김옥현 박홍자
사무총장	천영철

2. 회의록

가. 총회 회의록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총회 회의록

(2021년 2월 24일(수)~26일(금) / 서면총회)

■ 회의

1. 회원점명 및 개회

대의원 22명 중 회신 20명, 미회신 2명으로 개회가 성립되다.

2. 전회의록 채택

전회의록을 유인물로 보고,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보고사항

가. 2020년 사업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나. 2020년 감사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다. 2020년 결산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결의사항

가. 의안1.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나. 의안2. 정관변경

아래와 같이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안을 발의한대로 정관을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개정(안)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신설> 2. 감사 2인 3.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17인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감사 2인 4.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17인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별지>						
기본재산목록						
	소재지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 고
기 본 재 산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5호	건물	13평	11,880,000	한국기독교사 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임대
		대지		-		
		출연금		47,540,000	한국기독교사 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소계		59,420,000		

<별지>						
기본재산목록						
	소재지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 고
기 본 재 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대지		-		
		출연금		59,420,000	한국기독교사 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소계		59,420,000		

5. 상임이사 선임의 건

김중생 목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하기로 가결하다.

2021년 2월 26일

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2021년 2월 22일(월)~23일(화) / 서면이사회)

■ 회의

1. 회원점명 및 개회

- 회 신 : 정성진 손인웅 오정현 고명진 김동배 황성은 김성이 김종생 권태진 박경배
박종삼 오정호 유만석 김한호 황덕영 박동찬 정무성
- ※ 이사 17인 전원 회신

2. 전회의록 채택

전회의록을 유인물로 보고,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2021년 총회 보고사항

- 가. 2020년 사업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나. 2020년 감사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다. 2020년 결산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라.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2021년 총회 부의사항

- 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정관변경의 건
아래와 같이 총회에 부의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개정(안)
<p>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1. 이사장 1인</p> <p><신설></p> <p>2. 감사 2인</p> <p>3.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17인</p>	<p>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1. 이사장 1인</p> <p>2. 상임이사 1인</p> <p>3. 감사 2인</p> <p>4.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17인</p>
<p>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생략)</p> <p><신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5. (생략)</p>	<p>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별지>

기본재산목록						
	소재지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 고
기 본 재 산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5호	건물	13평	11,880,000	한국기독교사 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임대
		대지		-		
		출연금		47,540,000	한국기독교사 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소계		59,420,000		

<별지>

기본재산목록						
	소재지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 고
기 본 재 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대지		-		
		출연금		59,420,000	한국기독교사회 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소계		59,420,000		

5. 상임이사 선임의 건

김종생 목사의 선임을 총회에 부의하기로 가결하다.

2021년 2월 23일

3. 2021년 사업보고

1.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설날 사랑나눔

- 가. 일 시 : 2021년 2월 8일(월) 오후2시
- 나. 장 소 : 성민교회 (서울 용산구 동자동) 및 돈의동
- 다. 대 상 :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1,200세대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500세대
- 라. 내 용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명절선물전달
- 마. 주 최 :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교회총연합

2. 서면 정기이사회 및 서면 정기총회

※ 코로나 재확산 방지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 됨

가. 서면 정기 이사회

- 기간 : 2021. 02. 22. - 23
- 안건 : 총회 보고사항
2020년 사업, 결산 감사보고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나. 서면 정기 총회

- 기간 : 2021. 02. 24. - 26
- 안건 : 총회 보고사항 - 2020년 사업, 결산 감사보고
총회 결의사항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3. 고난받는 미얀마와 함께하는 제1차 기도회

- 가. 일 시 : 2021년 5월 4일(화) 오후 4:00~5:00
- 나. 장 소 : 유튜브 생중계
한교봉 : www.youtube.com/한교봉KD
KWMA : www.youtube.com/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행사장소: 서울시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층)
- 다. 공동주최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
- 라. 참가단체 : 미얀마한인선교사회, KWMF(한인세계선교사회), KIMNET(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KWMC(한인세계선교협의회), 한국미얀마커뮤니티,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한국과미얀마연대

마. 후 원 : 한국교회총연합

바. 순 서

- 사 회 : 강대홍 목사(KWMA 사무총장)
- 개회인사 : 정성진 목사(한교봉 대표회장)
- 찬 송 가 :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 대표기도 : 조재호 목사(고척교회)
- 성경봉독 : 이여백 목사(KWMA 법인이사)
- 메 시 지 :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 경과보고 : 김종생 목사(한교봉 상임이사)
- 증 언1 : 조모아 대표(한국과미얀마연대)
- 중보기도1 : 오일영 목사(기감 선교국 총무)
- 증 언2 : 강성원 선교사(미얀마한인선교사회 회장)
- 중보기도2 : 송재홍 목사(기성 선교국장)
- 후원금 전달 : 국내 기독교대학 미얀마 유학생(15명)
미얀마 한인선교사(5명)
- 격려의말씀 : 김태영 목사(한국교회총연합 직전 대표회장)
- 축 도 : 조경호 목사(KWMA 법인이사)

4.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업무협약 체결식

가. 일 시 : 2021년 10월 25일(월) 오후 3시

나. 장 소 :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봉사단

다. 진 행 : 천영철 사무총장(한교봉)

- 인사말씀
정성진 대표회장(한교봉)
이여백 법인이사(KWMA)
- 취지설명
김종생 상임이사(한교봉)
강대홍 사무총장(KWMA)
- 서명 및 교환

5.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4주년 세미나 및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업무협약식

가. 주 제 :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사례를 통한 기독교의 성과와 과제

나. 공동주최 : 한국교회봉사단,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다. 일 시 : 2021년 12월 1일(수) 오후1:30-3:30

라. 장 소 : 충남 태안 의항교회

마. 형 식 : 유튜브 생중계 www.youtube.com/한교봉KD
바. 순 서

□ 1부 기념예배(1:30~2:00)

인도 : 이광희 목사(태안 의향교회)
기도 : 함규석 장로(태안 소망교회)
찬송 :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설교 : 정성진 목사(한교봉 대표회장)
축도 : 김중남 목사(태안 파도교회)

□ 2부 기념세미나(2:00~3:20)

사 회 : 이진형 사무총장(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인사말 : 정성진 대표회장(한국교회봉사단)
축 사 : 가세로 태안군수
발 표 1: 김종생 상임이사(한국교회봉사단)
“서해안 기름 제거 방제작업 자원봉사의 성과와 과제”
발 표 2 : 양재성 대표(기독교환경운동연대)
“서해안 사태와 생태적 회심”
발 표 3 : 유성상 목사(태안 만리포교회)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자원봉사와 미래목회”
질의응답
업무협약(MOU) 체결식 : 한국교회봉사단,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광 고 : 천영철 사무총장(한국교회봉사단)

6.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2021 성탄절 사랑나눔

가. 일 시 : 12월 21일(화), 22일(수)
나. 장 소 : 용산구 동자동 성민교회, 돈의동
다. 자원봉사 : 일산광림교회 자원봉사자 10여명 참여
라. 대 상 :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1,200세대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500세대
마. 내 용 : 동자동 주민 성탄절 선물 포장 및 전달

7. 돈의동 쪽방촌 주민 공동체 지원사업

가. 기간 : 2021년 3월 ~ 12월
나. 내용 : 절기별 선물 전달 및 협동사업 정기활동 지원
주민 반찬나눔 (매주 70여명)

8. 조직사업

가. 언론 간담회

- ① 일 시 : 3월 18일(목) 오후 12시
- ② 장 소 : 서울 한국프레스클럽
- ③ 참 석 : 고석표 기자(기독교방송), 노충현 국장(기독신문), 최치영 국장(침례신문),
이현주 기자(기독교연합신문), 김성진 부국장(기독공보),
김종생 상임이사, 천영철 사무총장
- ④ 내 용 : 한교봉과 교계언론 협력 방안 논의

나. 교단 사회봉사부 총무 간담회

- ① 일 시 : 3월 25일(목) 오후 12시
- ② 장 소 : 서울 정동 달개비
- ③ 참 석 : 오상열 목사(예장통합 사회봉사부), 이창만 목사(기성 사회평신도국),
임정문 목사(예성 사회복지국), 남세도 목사(예장백석 사회복지위원회),
백승완 국장(성공회 사회선교국)
김종생 상임이사, 천영철 사무총장
- ④ 내 용 : 한교봉과 교단 사회봉사 업무 협력 방안 논의

9. 연대사업

- 가. 한국교회총연합 (협력단체)
- 나.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협력단체)
- 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원 단체)
- 라.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공동회장 단체)
- 마.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단체)
- 바. 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원단체)
- 사.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협력단체)
- 아.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협력단체)
- 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협력단체)

10. 홍보사업

가. 홈페이지 운영

국문 <http://www.koreandiakonia.org> /영문 <http://en.koreandiakonia.org>

나.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D1225>

유 튜 브 <http://www.youtube.com/c/한교봉KD>

다. 언론 광고

- 고난받는 미얀마와 함께하는 제1차 기도회 (국민일보 / 2021.04.30)
- 고난받는 미얀마의 아픔에 함께해 주세요 (국민일보 / 2021.06.23)

라. 홍보물 제작

- 기관 사업보고서 제작

감 사 보 고 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회장 귀하

본 감사는 2022년 1월 5일 11시부터 귀 기관의 2021년도 중
에 이루어진 재정 및 행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
사에 임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감
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2. 1. 5.

감사 김 옥 현



감사 박 홍 자



별 첨 : 감사의견서 1부 끝.

감 사 의 견 서

1.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가. 감사에 임하면서 다음의 장부 및 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1) 수입 지출에 따른 각종 대장 및 입출금 전표
- 2) 각종 영수증 확인 및 편철상태
- 3) 수령한 세금계산서 편철보관상태
- 4) 각종 공문서 수발 및 정리상태
- 5) 지출 계정별로 타당하게 지출하였는지 등

나. 수입 및 지출(전년도 이월금포함)을 검토한바

2020년도 이 월 금 : 262,148,738원

2021년도 총 수입금액 : 368,604,621원

2021년도 총 지출금액 : 233,227,044원

잔 액 : 397,526,315원입니다.

(통장잔고 397,341,704원 /보유현금 184,611원)

다. 감사결과 월별 재정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각종 부책 등의 정리도 잘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영수증 은 행잔고증명 등 관계 자료를 검토한바 정확하였습니다.

5. 2021년 결산보고서

2021년 KD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결산서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이월금

(단위: 원)

관	항	목	2020년 이월금	산 출근 거 (비고)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262,148,738	전년이월금

수입부

(단위: 원)

관	항	목	합계	산 출근 거 (비고)
회비	회비	일반회비	48,000,000	임원 및 회원 정기회비
후원금	후원금	사업후원금	18,835,800	사업후원(서울시_재해)
		지정후원금	2,400,000	지정후원금(쪽방)
		일반후원금	282,623,930	일반후원금(절기사업 등)
		소외계층영양지원후원금	3,955,000	지정후원금(국내외소외계층영양지원후원금)
잡이익	잡이익	이자수입	377,489	예금에대한 이자수입
		잡이익	8,342	자동이체, 원단위 할인 등
선납세금	선납세금	선납법인세	35,230	선납법인세 환급금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10,183,420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개인부담분 공제
비품	비품	비품	240,000	4대보험 선급금 등
외환차익	외환차익	외환차익	1,945,410	외화통장환율차액분
총 계			368,604,621	

지출부

(단위: 원)

관	항	목	합계	산 출근 거 (비고)
사무비	운영비	지급입차료	9,000,000	사무실 임대관리비
		통신비	953,281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사용료 외
		제세공과금	6,283,680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세 외
		도서인쇄비	349,100	신문구독료, 도서구입
		소모품비	3,497,260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지급수수료	6,636,020	복합기/홈페이지/CMS/회계사기장/송금수수료
		차량유지비	3,875,900	법인차량주유비, 법인차량수리비 외
		잡비	1,870	(우편)연체료및원단위절사
	소 계	30,597,111		
	업무비	업무추진비	5,900,240	업무추진 경비
		회의비	298,160	조직회의 및 각종 회의비
		소 계	6,198,400	
	인건비	급여	63,216,000	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3,231,110	건강보험료
		소 계	66,447,110	
합 계			103,242,621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비고)	
사업비	구호사업비	해외구호(재해)	34,301,828	아이티직업학교 운영경비	
		재해구호(재해)	28,213,440	미안마재해/아프가니스탄어린이축구용품지원 진행경비	
		소 계	62,515,268		
	기획사업비	설날사랑나눔	2,084,615	설날사랑나눔 진행경비	
		성탄절사랑나눔	6,973,400	성탄절사랑나눔 진행경비	
		서해안기념사업	4,458,740	서해안기념사업 진행경비	
		폭방.주거위기가정돌기	2,200,000	폭방,주거위기가정돌기 사업진행경비	
		북한영육아지원	1,350,470	북한영육아지원 진행경비	
		소 계	17,067,225		
	기타사업	행사비(총회)	9,114,260	총회 진행경비	
		홍보사업	9,720,270	사업보고서제작 및 홍보영상제작·방송	
		사업운영관리비	17,101,060	사업운영관리	
		소 계	35,935,590		
	조직사업비	네트워크강화	2,401,750	네트워크강화 및 유관기관 강화비	
		자원봉사네트워크조직	500,000	자원봉사네트워크강화 회비 및 경비	
		사회복지네트워크조직	1,340,600	사회복지네트워크강화 진행회의비	
		소 계	4,242,350		
	합 계			119,760,433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	선납세금	55,000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 계	55,000	
합 계			55,000		
잡손실	잡손실	잡손실	70	원단위절사 외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10,168,920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개인공제분 납부	
총 계			233,227,044		

2021년 결산	이월금	262,148,738
	총수입	368,604,621
	총지출	233,227,044
	잔액	397,526,315
지정기금	기본자산	59,420,000
	퇴직금적립	40,000,000
	북한영유아영양지원금	47,523,397
	KWMA연합사업	10,610,000
	긴급재난구호기금	37,289,057
	사업추진금	159,683,861
	차기이월 사업준비금	43,000,000
총잔액		-

6. 2022년 사업계획

1. 서해안 피해극복 15주년 기념사업

가. 사업목표

-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 사업 추진

나.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다. 사업내용

- 15주년 기념 컨퍼런스
- 15주년 기념 학술논문 공모
- 생태사료관 보충 및 확대
- 지역 목회자 모임 지원
- 기념 조형물 건립

라. 사업주관: 서해안 피해극복 15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마. 사업예산

- 100,000,000 원

2. 조직사업

가. 사업목표

- 임원 및 회원 조직관리 및 확대사업

나. 사업기간

- 2022년 2월 ~ 2021년 12월

다. 사업내용

- 17개 광역시도 지역별 회원 간담회(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제주)
- 정기임원회의 및 임원 간담회
-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라. 사업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임원회

마. 사업예산

- 30,000,000 원

3. 국내 재난구호 사업

가. 사업목표

- 전염병,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국내 재해 발생시 현장 실사 및 긴급구호

나. 사업기간

- 2022년 재해발생시

다. 사업내용

- 코로나19 극복 지원
- 재해발생시 현장 실사단을 파견하고 초기 긴급구호 사업 진행
- 신속한 초기 실사 및 구호활동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조성
- 재해 모금활동 및 구호/복구사업

라. 사업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재난지원본부

마. 사업예산

- 20,000,000 원

4. 국내 소외계층 지원사업

1) 절기사업

가. 사업목표

- 주요 절기에 소외계층 위로 및 지원

나.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다. 사업내용

- 설날, 추석, 성탄절 등 절기 사업진행
- 쪽방주민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위로잔치 및 선물 전달

라. 사업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국내사업본부

마. 사업예산

- 45,000,000 원

2) 쪽방촌 주민 지원사업

가. 사업목표

- 서울지역 쪽방촌 주민 자립과 협동사업 지원

나.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다. 사업내용

- 돈의동 쪽방촌 주민 500세대의 “헤뜨는 사랑방” 주민 공동체 협동사업 사업 지원
- 동자동 쪽방촌 주민 1,000세대 반찬 나눔

라. 사업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국내사업본부

마. 사업예산

- 10,000,000 원

5. 북한사업

가. 사업목표

- 북한지역 영유아 영양지원 및 의료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다. 사업내용

○ 북한 영유아 영양강화식품 지원

○ 북한 의료 지원

라. 사업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북한사업본부

마. 사업예산

○ 50,000,000 원

6. 디아코니아포럼 사업

가. 사업목표

○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와 협력하여 기독교 사회복지 관련 연구사업

나. 사업기간

○ 2022년 3월 ~ 2022년 12월

다. 사업내용

○ 기독교사회복지 영역별 세미나 진행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세미나

라. 사업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디아코니아포럼

마. 사업예산

○ 20,000,000 원

7. 홍보사업

가. 사업목표

○ 단체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

○ 교회, 개인, 크리스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캠페인

나.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다. 사업내용

○ 온라인 홍보

-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페이스북, 유튜브)

○ 언론사 홍보

- 사업별 보도자료 배포

- 사업현장 동행취재 지원

- 신문 및 방송 광고

- 언론 광고를 통한 모금 캠페인 전개

○ 홍보 대사 선정 및 홍보

○ 홍보물 제작

- 2021년 연차보고서 제작

- 홍보용 리플렛, 홍보키트 제작
- 각종 자료집 제작 및 도서발행(도서출판 KD)

라. 사업주관: 한국교회봉사단 사무국

마. 사업예산

○ 50,000,000원

8. 연대사업

가. 사업목표

○ 유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나.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다. 사업내용

- 1) 한국교회총연합
- 2)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 3)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 4)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5)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6)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 7) 전국재해구호협회
- 8) 각 교단 사회봉사부 및 교계연합단체

라. 사업예산

○ 10,000,000원

7. 2022년 예산(안)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2022년 예산(안)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수입부

(단위 : 원)

관	구 분	2022년 예산금액
회비	회 비	120,000,000
후원금	사업후원금	335,000,000
기타수입	잡이익, 기타수입	10,000,000
	총 계	465,000,000

■ 지출부

(단위 : 원)

관	구 분	2022년 예산금액
사무비	운영비	30,000,000
	업무비	10,000,000
	인건비	78,000,000
	관공비	12,000,000
	소 계	130,000,000
사업비	1. 서해안 피해극복 15주년 기념사업	100,000,000
	2. 조직사업	30,000,000
	3. 국내외 재난구호 사업	20,000,000
	4. 국내 소외계층 지원사업	55,000,000
	5. 북한사업	50,000,000
	6. 디아코니아 포럼사업	20,000,000
	7. 홍보사업	50,000,000
	8. 연대사업	10,000,000
	소 계	335,000,000
	총 계	465,000,000

8. 정관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이웃사랑의 구현과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전개,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이웃사랑의 구현과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u>구호 및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사무소의 소재지)</p> <p>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401호에 둔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서울지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신관401호</p> <p>2~7. (생략)</p>	<p>제3조(사무소의 소재지)</p> <p>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u>(새로운 주소)</u>에 둔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u>서울지회: (새로운 주소)</u></p> <p>2~7. (생략)</p>
<p>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p>	<p>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u>이사회</u>를 소집하여 <u>이사회에 부여된 기능을 주관한다.</u></p>
<p>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신설></p>	<p>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u>재난이나 감염병 유행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는 서면이나 화상회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u></p>
<신설>	제5장 총재단
<신설>	제21조(총재단의 구성) 총재단은 총재, 부총재, 명예이사장, 이사장, 대표단장, 상임단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p>제22조(총재단의 선임)</p> <p>① 총재와 부총재는 본회 대표를 역임한 자로 한다.</p> <p>② 명예이사장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로 총재단에서 추대한다.</p> <p>③ 대표단장은 총재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p>
<신설>	<p>제23조(총재단의 임기)</p> <p>① 총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총재단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신설></p>	<p>제24조(총재단의 직무) ① 총재단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② 대표단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신설></p>	<p>제25조(총재단 회의) ① 총재단 회의는 총재단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 총재단 회의는 전원 합의체로 운영한다.</p>
<p>제5장 이사회</p>	<p>제6장 이사회</p>
<p>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p>	<p>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p>
<p>제22조(이사회의 소집)</p>	<p>제27조(이사회의 소집)</p>
<p>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p>	<p>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p>
<p>제24조(의결정족수)</p>	<p>제29조(의결정족수)</p>
<p>제25조(서면결의)</p>	<p>제30조(서면결의)</p>
<p>제6장 재산과 회계</p>	<p>제7장 재산과 회계</p>
<p>제26조(재산의 구분)</p>	<p>제31조(재산의 구분)</p>
<p>제27조(재산의 관리)</p>	<p>제32조(재산의 관리)</p>
<p>제28조(재원)</p>	<p>제33조(재원)</p>
<p>제29조(회계년도)</p>	<p>제34조(회계년도)</p>
<p>제30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p>	<p>제35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p>
<p>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p>	<p>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p>
<p>제32조(회계감사)</p>	<p>제37조(회계감사)</p>
<p>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p>	<p>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총재단에서 결정해 지급할 수 있다.</p>
<p>제34조(차입금)</p>	<p>제39조(차입금)</p>
<p>제7장 사무 부서</p>	<p>제8장 사무 부서</p>
<p>제35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u><신설></u>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p>	<p>제40조(사무국) ① 총재단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대표단장의 추천으로 총재단에서 임명한다. ④ 그 외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대표단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p>

<p>제36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p>	<p>제41조(한국교회봉사단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u>한국교회봉사단</u>을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p>																																																																														
<p>제37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p>	<p>제42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p>																																																																														
<p>제8장 보 칙</p>	<p>제9장 보 칙</p>																																																																														
<p>제38조(법인해산)</p>	<p>제43조(법인해산)</p>																																																																														
<p>제39조(정관변경)</p>	<p>제44조(정관변경)</p>																																																																														
<p>제40조(업무보고)</p>	<p>제45조(업무보고)</p>																																																																														
<p>제41조(준용규정)</p>	<p>제46조(준용규정)</p>																																																																														
<p>제42조(규칙제정)</p>	<p>제47조(규칙제정)</p>																																																																														
<p>별지1</p> <table border="1" data-bbox="172 792 746 1265"> <thead> <tr> <th colspan="7">기본재산목록</th> </tr> <tr> <th></th> <th>소재지</th> <th>자산 분류</th> <th>면적 (㎡)</th> <th>평가액 (원)</th> <th>출연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기 본 재 산</td> <td>종로구 연지동- 136-46 키독교화 관 705호</td> <td>-건물</td> <td>13평</td> <td>11,880,000</td> <td>한국기독교사 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td> <td>임대</td> </tr> <tr> <td></td> <td>대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출연금</td> <td></td> <td>47,540,000</td> <td>한국기독교사 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td> <td></td> </tr> <tr> <td></td> <td>소계</td> <td></td> <td>59,420,0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본재산목록								소재지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 고	기 본 재 산	종로구 연지동- 136-46 키독교화 관 705호	-건물	13평	11,880,000	한국기독교사 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임대		대지		-				출연금		47,540,000	한국기독교사 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소계		59,420,000			<p>별지1</p> <table border="1" data-bbox="783 815 1431 1249"> <thead> <tr> <th colspan="7">기본재산목록</th> </tr> <tr> <th></th> <th>소재지</th> <th>자산 분류</th> <th>면적 (㎡)</th> <th>평가액 (원)</th> <th>출연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기 본 재 산</td> <td><삭제></td> <td>삭제</td> <td><삭제></td> <td><삭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td> <td>대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출연금</td> <td></td> <td>59,420,000</td> <td>한국기독교사 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td> <td></td> </tr> <tr> <td></td> <td>소계</td> <td></td> <td>59,420,0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본재산목록								소재지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 고	기 본 재 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대지		-				출연금		59,420,000	한국기독교사 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소계		59,420,000		
기본재산목록																																																																															
	소재지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 고																																																																									
기 본 재 산	종로구 연지동- 136-46 키독교화 관 705호	-건물	13평	11,880,000	한국기독교사 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임대																																																																									
		대지		-																																																																											
		출연금		47,540,000	한국기독교사 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소계		59,420,000																																																																											
기본재산목록																																																																															
	소재지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 고																																																																									
기 본 재 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대지		-																																																																											
		출연금		59,420,000	한국기독교사 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소계		59,420,000																																																																											

9.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어명칭은 “Korean Diakonia”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이웃사랑의 구현과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전개,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401호에 둔다.
- ② 법인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시도 지회를 둘 수 있다.
- ③ 법인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회를 둔다.
 1. 서울지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401호
 2. 경기지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3. 인천지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8
 4. 충청지회: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78
 5. 영남지회: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331
 6. 호남지회: 광주광역시 남구 진다리로 12
 7. 강원지회: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68-6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및 북한지역의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
2.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 사업
3. 기독교 기관의사회복지 학술 및 연구프로그램 개발, 교육
4. 자원봉사운동 전개 및 교육
5. 홍보 및 출판
6. 사회복지 전문화를 위한 엑스포 및 총람편찬사업
7. 국내·외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
8. 국내외 기부 문화 확산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기관,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단체회원: 기독교 각 교단 및 교회, 기독교사회복지관련 기관, 시설, 단체

2) 개인회원: 기독교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자로 본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③ 가입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17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5-2조(대의원)

- ①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실행위원, 각 지회에서 2인, 각 전문사업단에서 선출된 2인으로 한다.
- ② 1항에 해당되지 않은 회원단체에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

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당해 사업 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 부서

제35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37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기구를 두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06년 9월 28일 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7월 10일 개정
 2009년 5월 12일 개정
 2016년 4월 21일 개정
 2018년 12월 26일 개정
 2019년 4월 19일 개정
 2020년 6월 26일 개정

별지1

기본재산목록						
	소재지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 고
기본 재산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5호	건물	13평	11,880,000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임대
		대지		-		
		출연금		47,540,000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소계		59,420,000		

10. 회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종류와 가입절차,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자격) 정관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① 교육부 학위인정 신학교를 보유한 기독교 교단
- ② 위 ①항의 교단에 소속된 교회
- ③ 위 ①②항에 해당하는 교단 및 교회가 설립 혹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련 기관, 시설, 단체
- ④ 기독교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로 본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제3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별표(1) 혹은 별표(2)의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무국은 가입신청자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시 이사회에 부의한다.
 - 가. 해당교단 혹은 교회나 기관이 소속된 교단이 교육부 학위인정 신학교를 보유한 교단인지 여부
 - 나. 신청 개인·기관/단체·교회·교단 및 소속·관련 기관이 제2조①에 해당되는 교단에 의해 이단관련 규정이 되었는지 여부
 - 다.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의 진위 여부
- ③ 가입승인에 관한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의결로 한다.

제4조(회원권리의 행사)

- ① 단체회원은 그 대표자가 회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단체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③ 대리권을 행사하는 대리인은 서면 위임장을 사전에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회비 및 제 부담금)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개인회원 월 1만 원 이상
- ② 단체회원 월 10만 원 이상

제6조(회원권의 제한) 정관 제7조에 명기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그 권리를 제한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 3. 23.

